

울산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146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10. 12.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소2957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B은”을 “피고 B은”으로, “원고 C은”을 “피고 C”으로, “원고 D은”을 “피고 D은”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18,433원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울산 북구 F 전 299㎡ 및 G 대 2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6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2018. 2.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다. 원고(개명 전: H)는 전 남편인 피고 B에 대하여 공증인 I 작성 증서 제2013년 제62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따른 위자료 4억 원(변제기일 2014. 1. 29.)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1/3)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을 대위하여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8. 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비용(이하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이라 한다)으로 10,855,300원(= 취득세 9,681,000원 + 지방교육세 412,410원 + 농어촌특별세 761,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바, 이는 상속재산이 민법 제1006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경우, 위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대위권 행사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총 10,855,3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618,433원(= 10,855,3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608,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관련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나51379)에서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문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의 모든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9. 17.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B의 원고(A, 이하 같음)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J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호252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기존 및 향후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 4. 피고 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제5항의 “소송”이나 “조정”은 문언상 이 사건 관련사건에만 국한될 뿐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9. 10.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당시에는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조정조항 합의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 C, D에게도 미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 비용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조정조항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비용상환금에 대한 법정상속분 각 3,618,43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¹⁾인 2019. 12. 3.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1)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